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30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 박홍배 • 이기헌 • 이상식

민병덕 · 문대림 · 김태년

김현정 · 김남근 · 강득구

강훈식 • 한준호 • 김영진

이광희 • 박해철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의 기간(1년 이내)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짧다는 점 등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제대로 된 자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배 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며, 이를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
-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거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가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개시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제19조제6항 및 제19조의2제7항 등).
- 다. 난임치료휴가의 일수를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여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18조의3제1항 본문).
- 라. 육아휴직의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며, 다태아 출산 등의 경우에 휴직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안 제19조제2항).
- 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불이익한"을 "불리한"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배우자"를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10일"을 "20일(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90일이"를 "120일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를 "3회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다음 날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6일"로, "1일은"을 "2일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고, 징계 등"을 "해고나 그밖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태아 출산의 경우 1인을 초과하는 자녀부터 1인당 1년 이내, 미숙아·장애아 출산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⑥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 ⑦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육아기"를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육아기"로,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단축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
롱 방지) ① (생 략)	롱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②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	
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
사업주는 근로자가 <u>배우자</u> 의	<u>배우자(사실</u>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	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	<u>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구하는 경우에 <u>10일</u> 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u>20일(배우자가 한</u>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u> 경우에는 25일)</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	③
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	<u>120</u>
<u>일이</u>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일이

-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④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⑤ (생략)

<신 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 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 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에 연간 <u>3일</u> 이내의 휴가를 주 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u>1일은</u>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 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배
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
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
한 다음 날에 배우자 출산휴가
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u>6일</u>
2 <u>일</u>
<u>o</u> ,
②
<u>해고나 그밖의</u>

-----3회에--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 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이를 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u>1년</u> 이 내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⑤ (생 략)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육아휴직) ①
<u>1</u> 2 <u>4</u> 1
6학년
·
② <u>2년</u>
<u>다만, 다태아 출산의</u>
경우 1인을 초과하는 자녀부터
1인당 1년 이내, 미숙아・장애
아 출산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추
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육
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
아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신 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u>만 8세</u>이하 또는 초등학교 <u>2학년</u>이 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⑥ (생 략)
- ⑦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신청방법및 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u>0]</u>	경과힌	: 날에	육아주	후직이	개
	시	된 것으	.로 본	<u> </u>		
	<u>7</u>	육아휴	-직의	신청방	법 및	절
	<u>차</u>	등에 :	관하여	필요형	<u></u> 사형	<u> 은</u>
	대 등	통령령	으로 정	한다.		
<u></u>	192	조의2(육	우아기	근로시	간 단	축)
	1				- <u>12세</u> -	
				<u>6</u> 학	<u>년</u>	
		·				
		_				
	(2)	· ~ ⑥	(현행고	과 같음	·)	
		》 사업주				육
		<u> </u>				
		그 겨 명시				
		<u>'</u> 를 하ス				
			1 1	, _	\cup \cup \cup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을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경

과한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

<신 설>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u>만 8</u> 센 이하 또는 초등학교 <u>2학년</u>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 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u>축이</u>	개기	시된	것으	으로_	본디	<u>}</u> .	
	⑧ 육	-0}-	7] ī	그로	시간	단	축의	<u>신</u>
	청방법	법	및	절차	. 등	에_	관ㅎ	<u> - 여</u>
	필요학	한	사형	항은	대	통령	렁으	<u>로</u>
	<u>정한</u> ɪ	<u> 구.</u>						
제	19조의	의5(육이	l-지원	<u> </u> 을	위	한	ユ
	밖의	조기	치)	1 -			<u>12</u>	세
						- <u>6</u> 학	<u>년</u>	
	1. ~	4.	(현	행과	같음	<u>)</u>		
	② (₹	현행	과	같음)			